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69

발의연월일: 2020. 7. 13.

발 의 자:정성호·강병원·김경협

김영주 · 김정호 · 박용진

백혜련・박 정・윤관석

윤후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많은 희생을 치러왔음. 나아가 최근에는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으로 반환공여구역에 경제공동화 현상까지 발생해 해당 지역의 경제 침체가 심각한상황임.

특히, 경기도는 전국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 87%를 차지하는 만큼 특별한 희생을 치러 왔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 역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절실 한 상황임.

이에 반환공여구역에서 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반환공여구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해 오는 기업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5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감면) 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개 정 안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감면) 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 2조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2025년 12월 31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중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